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죄의 가중처벌 근거 마련 >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54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죄의 가중처벌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5. 4. 11.
3. 회부연월일: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의 특별법에서는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죄의 가중처벌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¹⁾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2(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특례) 제19조제1호가목 중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은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한 범죄 행위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1) ‘보호자 등’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교원지위법」 제19조)

또한 이를 행한 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표 1]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관련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제1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한 다음의 행위 - 범죄 행위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학생(「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	보호자 등(「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기타(「교원지위법」 제20조제4항)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2020년 1,197건, 2023년 5,050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4년에는 816건 감소하였으나 4,234건 수준으로 나타남.

이 중 상해·폭행으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2020년 113건, 2023년 503건 등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518건으로 나타나 전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12.2%를 차지함.

[표 2]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활동 침해행위(A)	1,197	2,269	3,035	5,050	4,234
상해·폭행(B)	113	239	361	503	518
상해·폭행 비중(B/A)	(9.4)	(10.5)	(11.9)	(10.0)	(12.2)

주: 1.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
2. 상세현황은 【참고자료1】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현황 참조
자료: 교육부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보호자 등에게 현행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학교에서의 봉사 등이 이행되었고, 침해 보호자 등에게 사과, 재발방지 서약 등이 이행되었음.

[표 3] 교육활동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단위: 건, %)

구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조치 없음	기타 ²⁾	침해 아님 ¹⁾	합계
학생 (비중)	881 (23.4)	715 (19.0)	153 (4.1)	1,044 (27.7)	251 (6.7)	328 (8.7)	54 (1.4)	130 (3.4)	27 (0.7)	190 (5.0)	3,773 (100.0)

구분	사과	재발 방지 서약	조치없음	기타 ³⁾	침해 아님 ¹⁾	합계
보호자 등 (비중)	171 (37.1)	110 (23.9)	39 (8.5)	21 (4.6)	120 (26.0)	461 (100.0)

주: 1) (공통: 침해 아님) 2024학년도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의무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사항’이 상당수 발생하여 별도 분류
2) (학생: 기타) 상담, 사과 및 반성문, 병원치료 등
3) (보호자 등: 기타) 학교장 면담, 상담, 경고장 발송, 신원미상으로 조치 불가 등
1. 2024학년도 기준, 본 조치만 해당(중복되는 부가 조치 제외)
2. 상세현황은 【참고자료2】 교육활동 침해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참조
자료: 교육부

현행 「교원지위법」은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이외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범죄 행위에는 각 근거법에 따른 처벌이 적용됨.

개정안은 상해·폭행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교권 침해가 발생²⁾하는 상황에서, 해당 침해행위를 한 학생·보호자 등에 대해 「형법」에서 규정한 형보다 가중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교원지위법」에 신설함으로써,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참고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 출동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 중인 운전자 등을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 개별법에서 「형법」에 규정된 처벌(제257조제1항 상해, 제258조제1항 중상해, 제259조제1항 상해치사, 제260조제1항 폭행)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2) 2025.4.10.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함.

[표 4] 개별법에서의 가중처벌 규정 사례

법률	구분	죄		형	비고(「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하거나 협박한 사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운행 중인 자동 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 유기 징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3년 이상 유기 징역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제1호다목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	• 의료기관의 응 급실에서 응급 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 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3년 이상 유기 징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3년 이상 유기 징역

교원의 업무가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중요한 공적 업무라는 점에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보호자 등이 개정안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할 경우,

법적 보호 강화를 통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이 제한되어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교원의 안정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전체를 대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형법」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257조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60조제1항),

해당 행위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행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해당 행위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형을 규정하고, 해당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폭행하는 일반적인 처벌 수준보다 높은 형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2배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음.

[표 5]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구분		죄	형
상 해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사람의 신체를 <u>상해</u> * 미수범도 처벌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행함 * 미수범도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 발생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행함	•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제258조의2 (특수상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범함 * 미수범도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를 범함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폭 행	제259조 (상해치사)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3년 이상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행함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행함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261조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를 범함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62조 (폭행치사상)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함	•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름
	제264조 (상습범)	•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의 죄를 범함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공 통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제264조	•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또한,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범죄 행위로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외에 같은 법 같은 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별도로 가중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가중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³⁾ 14세 미만인 학생의 행위는 처벌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준을 높이는 법적 제재보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⁴⁾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4)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최소 침해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동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해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조치를 가중할 수 있게 하는 등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점의 징벌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과, 재발방지 서약 외에도 교원이 원할 경우 형사소송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교원지위법」이 아닌 「형법」에 따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음.
- 이에, 의료인과 소방공무원 등 가중처벌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규정한 타 직군과 달리, 교원에게 본 개정안과 같이 일괄적으로 2배를 가중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구분	상해	폭행
형법상 원칙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공무원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등 가중처벌 규정의 방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형사상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이에 대한 조치는 형사처벌 절차와 그 대상·목적·내용을 달리함.
- 또한, 「형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교원지위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상 적절한지,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에 한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견없음**

- 가중처벌 규정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잠재적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 다만,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또한, 공공 안전·복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공무원, 의료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함.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자료>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													교육 활동 침해 아님	합계
	상해 폭행	무고	협박	모욕· 명예 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공무 및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	교육 활동의 반복적 부당 간섭	교육 활동 방해	영상 무단 합성· 배포	기타		
2020	113 (9.4)	-	48 (4.0)	668 (55.8)	12 (1.0)	31 (2.6)	27 (2.3)	75 (6.3)	110 (9.2)	67 (5.6)	-	-	46 (3.8)	-	1,197
2021	239 (10.5)	-	79 (3.5)	1,271 (56.0)	22 (1.0)	66 (2.9)	70 (3.1)	95 (4.2)	207 (9.1)	122 (5.4)	-	-	98 (4.3)	-	2,269
2022	361 (11.9)	-	132 (4.4)	1,686 (55.6)	20 (0.7)	108 (3.6)	56 (1.8)	164 (5.4)	223 (7.3)	141 (4.6)	-	7 (0.2)	137 (4.5)	-	3,035
2023	503 (10.0)	-	140 (2.8)	2,221 (44.0)	41 (0.8)	125 (2.5)	56 (1.1)	168 (3.3)	339 (6.7)	161 (3.2)	1,147 (22.7)	42 (0.8)	107 (2.1)	-	5,050
2024	518 (12.2)	12 (0.3)	97 (2.3)	1,040 (24.6)	19 (0.4)	157 (3.7)	55 (1.3)	97 (2.3)	324 (7.7)	146 (3.4)	1,240 (29.3)	122 (2.9)	98 (2.3)	309 (7.3)	4,234

주: 1.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

2. () 안은 각 학년도 합계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교육부

2. 교육활동 침해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1) 학생

(단위: 건, %)

학년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¹⁾	전학	퇴학	조치 없음	기타 ²⁾	침해 아님 ³⁾	합계
2020	156 (14.4)	64 (5.9)	121 (11.2)	506 (46.8)		80 (7.4)	33 (3.1)		121 (11.2)		1,081
2021	296 (14.1)	147 (7.0)	226 (10.8)	947 (45.1)		195 (9.3)	41 (2.0)	69 (3.3)	177 (8.4)		2,098
2022	390 (13.8)	205 (7.2)	296 (10.4)	1,288 (45.5)	58 (2.1)	284 (10.0)	49 (1.7)	122 (4.3)	141 (5.0)		2,833
2023	662 (14.1)	491 (10.5)	411 (8.8)	2,116 (45.1)	205 (4.4)	492 (10.5)	72 (1.5)	142 (3.0)	106 (2.3)		4,697
2024	881 (23.4)	715 (19.0)	153 (4.1)	1,044 (27.7)	251 (6.7)	328 (8.7)	54 (1.4)	130 (3.4)	27 (0.7)	190 (5.0)	3,773

주: 1) 학급교체: 2022학년도 2학기부터 '기타' 항목에서 분리하여 작성

2) 기타: 상담, 사과 및 반성문, 병원치료 등

3) 침해 아님: 2024학년도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의무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사항'이 상당수 발생하여 별도 분류

1. 본 조치만 해당(중복되는 부가 조치 제외)

2) 보호자

(단위: 건, %)

학년도	조치없음	형사처벌	기타 ¹⁾	합계
2020		6 (5.2)	110 (94.8)	116
2021	26 (15.2)	13 (7.6)	132 (77.2)	171
2022 1학기	53 (43.8)	8 (6.6)	60 (49.6)	121

학년도	사과	재발방지 서약	조치없음	기타 ¹⁾	침해 아님 ²⁾	합계
2022 2학기	13 (16.5)	10 (12.7)	43 (54.4)	13 (16.5)		79
2023	56 (16.4)	61 (17.8)	173 (50.6)	52 (15.2)		342
2024	171 (37.1)	110 (23.9)	39 (8.5)	21 (4.6)	120 (26.0)	461 (100.0)

주: 1) 기타: 학교장 면담, 상담, 경고장 발송, 신원미상으로 조치 불가 등

2) 침해 아님: 2024학년도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의무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사항'이 상당수 발생하여 별도 분류

1. 본 조치만 해당(중복되는 부가 조치 제외)

2.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유형을 다양화함

자료: 교육부